

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3차 본회의 (2015. 12. 22.)

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총무위원회

목 차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| 1 |
| 2 | 거창 향노화 힐링 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| 6 |

〔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12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5. 12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5. 12. 18.

2. 요구이유

- 2015년 12월말 특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 특례 활용 의미가 없으며 외국어 교육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않아도 특구 운영에 문제가 없어 해제

3. 주요내용

1) 특구 해제신청(개요)

- 명 칭: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
(영문) Geochang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Special Zone
- 특화사업자: 경상남도 거창군
- 위 치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00번지 외 89필지
- 사업기간: 2005 ~ 2015년 12월말
- 지 정 일: 2005. 12. 31.(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-24호)
- 소요예산: 165억원(국비 63, 군비 100 민자 2)

- '09년까지 지특회계보조, '13년부터 국비 중단, '14년부터 100% 전액군비)

○ 특구면적: 206,885m²

○ 주요단위 사업

① 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②영어캠프 ③영어학습센터운영

○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2가지 특례적용 분석

| 특구법상 규제특례 | 특구법상 규제완화 주요 내용 | 교육청 규제특례 운영 현실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특구법 제19조 제①항 「초중등교육법」에관한특례 | ·외국인의 외국어 교원(강사) 임용시 자격기준 완화 ·「초중등교육법 제21조」(교원의 자격) | · 외국인 강사 임용시 경남도 교육청 기준 준용 -도기준:교육학전공,태솔 자격보유 등 심사 -특례적용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교원 확보 운영가능 |
| 특구법제20조제①항 「출입국관리법」에관한특례 | ·외국어 교원(강사) 사증(비자) 발급시 체류기간 완화(2년⇒3년) ·「출입국관리법 제8조,제10조」(사증, 체류자격) | · 매1년마다 자격 및 활동 평가후 재계약하는 실정으로 특례적용 실익 의미 없음(1년마다 비자 갱신) · 또, 개인사유로 재계약 포기 |

※ 주: 태솔(Tesol)은 영어교육 교사자격증(미국,캐나다)

○ 외국어 교육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않아도 특구 운영에 지장없음.

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」(안전행정부 제정정책과, 2013. 10)

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하는 지자체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(거창군 외 다수)

-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원어민 강사, 장학제도, 「교육도시 거창」 정책사업에 재정지원은 중단없이 추진

○ 해제사유

- '15년 12월말 특구기간 종료, 목적달성, 규제특례 활용 의미 없음,
- 교육특구는 전국 지역특성 공통화로 분류되어 특구 명예졸업제도 권장

2) 추진경과

가 주민공청회 의견청취(개요)

- 일시: 2015. 12. 11(금) 14:00 ~ 15:55(1'35')
- 장소: 군청 대회의실(4층)
- 대상: 80여명(주민, 초중등 학교장, 교육청관련자, 공무원 등)
- 주요내용
 -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해제에 대한 설명
 - 특구계획 및 해제(안)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개선
- 개최결과(의견 개선):
 - 교육특구가 해제되면 원어민 강사가 줄고, 영어 학습 중단 위기 걱정
- ⇒ 외국어 교육특구가 해제된다고 하여서 원어민 강사 등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. 특구 해제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설명

나. 간담회 개최

- 일시: 2015. 12.11(금) 15:00 ~
- 장소: 문화관광과 사무실 내
- 대상: 11여명 (학교장, 교사, 관련공무원 등)

○ 주요내용

-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추가 의견개진 및 대책 협의
- 향후, 원어민 강사지원은 장학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, 교육청과 협의체 구성후 계속지원 검토 등

3) 향후계획

- '15. 12.14 ~ 12.22: 군의회 의견청취(일반안전 제출 및 승인)
- '15. 12. 31: 중기청 해제 및 지정 신청
- '16. 2 ~ 3월: 중기청 안전상정 및 승인
- '16. 3월이후: 관보 및 지형도면 고시, 주민 열공람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(특구의 지정해제 등) 및 제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구의 지정 및 신청 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음.
-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는 2005.12.31(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-24호)로 2015년 12월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특구법상 규제완화 내용인 외국인의 외국어교원 임용 시 자격기준 완화는 경남도 교육청 기준을 준용 특례 적용이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 교원 확보 운영이 가능하고 외국어 교원사증(비자)발급 시 체류기간 완화(2년⇒3년)는 매 1년마다 자격 및 활동 평가후 재계약하는 실증으로 특례적용의 의미가 없는(1년마다 비자 갱신) 등 외국어 교육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않아도 운영상 지장이 없으며

- 특구폐지에 따른 폐지안 공고, 주민공청회,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자: 생략

6. 토론요자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자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찬성의견 채택

9. 소수의견 요자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 향노화 힐빙(休·건강·장수)바이오
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12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5. 12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5. 12. 18.

2. 요구이유

- 향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계획은 우리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, 청정산림, 산양삼, 창포, 오미자, 약용작물 등 농·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한 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1) 특구신청 개요

- 신청배경: 우리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, 청정산림, 산양삼 창포, 오미자, 약용작물 등 농·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한 향노화 힐빙(休·건강·장수) 바이오산업 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하기 위함.
- 명 칭: 향노화 힐빙(休·건강·장수) 바이오 산업특구)

- 위 치: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,443필지
(특구면적: 8,076,105m²)
- 사업기간: 2016 ~ 2020(5년)
- 소요예산: 69,727백만원
- 주요과제: 3개추진과제 18개 특화사업
 - 향노화휴양체험거점화사업(5),②향노화생산유통기반구축(5)
 - ③ 건강도시거창브랜드강화(8)
-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상 규제특례: 붙임

2) 추진경과 [주민공청회개최]

- 일시: 2015. 12. 11(금) 14:00 ~ 15:55(1'35')
- 장소: 군청 대회의실(4층)
- 대상: 80여명(주민,교육청관계자, 해당사업 관련 공무원 등)
- 주요내용
 - 거창 향노화 힐링 바이오산업특구 지정 및 계획(안) 설명
 - 특구계획 및 해제(안)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
- 공청회장 의견
 - 거창군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%로 산지이용 농가 소득 증대방안과 경남 미래 50년 성장사업으로 지정에 있어 과제가 포괄적인인데 어떤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되는지 등

3) 향후계획

- '15. 12.14 ~ 12.22: 군의회 의견청취(일반안건 승인)
- '15. 12. 31: 중기청 해제 및 지정 신청
- '16. 2 ~ 3월: 중기청 안전상정 및 승인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(특구의 지정해제 등) 및 제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구의 지정 및 신청 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음.
- 향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계획은 우리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, 청정산림, 산양삼, 창포, 오미자, 약용작물 등 농·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한 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함.
- 3개추진과제 18개 특화사업인 ① 향노화휴양체험거점화사업(5개특화), ②향노화생산유통기반구축(5개특화), ③건강도시 거창브랜드강화(8개특화)에 대해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상 규제특례를 받기 위한 것으로
- 특구지정에 따른 폐지안공고, 주민공청회,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**찬성의견 채택**

9. 소수의견 요지: **해당없음**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**해당없음**